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문

2025. 12. 3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2. 지원대상

###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가능한 공정의 범위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한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 다.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참여 제한 사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 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4. 지원 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b>50%</b>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비용의 <b>최소 10%</b> (또는 2천만원)
지원기준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받은 사업장의 지원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 (지원품목)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설비

- 양산품에 한해 비용 지원(단, 주조·표면처리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에 한해 공사품 지원 가능)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나.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 ①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②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 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 \* 내화성능, 화재감지·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해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다. 보행환경, 대피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디자인[별첨1]

라. ‘가’ 또는 ‘나’ 품목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단,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에 한함)

-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와 연계한 격벽 또는 내화구조 등 공사품으로서,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불가 사항>

-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
-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3,320억원
  -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6. 1. 28.(수) 10:00 ~ 일선기관별 채용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지급
    - ※ 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①세부공고문(덧붙임), ②사업참여 길라잡이, ③FAQ 참조
    - ※ 사업참여 길라잡이 및 FAQ는 [산업안전포털 > 안전동행지원사업 > 공지사항] 참조(추후 공지)

## 6. 세부 기준

- 기존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고, 제조설비(지원품목 중 ‘가’ 품목)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폐기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미폐기 시 결정 취소)
  -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기존 설비 없이도 신규 도입 가능(단,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존 설비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계획 수립[별첨2]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기존 설비 폐기\* 결과 제출[별첨3]
    - \* 폐기 증명 방법 : 주요 구조부를 절단하여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 및 매각·반출 불인정)
- 양산품(지원품목 중 ‘가’ 또는 ‘나’ 항목)의 경우 아래 내용이 검증 완료된 모델에 한해 신청 가능
  - (시장가격 검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민간 거래 실적\*이 5건 이상인 모델
    - \* 공단 및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않은 거래
  - (안전성 검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모델(KCs 또는 S마크)

**< 『양산품 모델별 시장가격 및 안전성 검증자로 제출 제도』 상시 운영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모델의 시장가격 및 안전성 증빙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이 이를 검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① 국내 제조사, ②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③ 해외설비 수입업체 (무역상), ④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기간 : (예정) '26. 1. 12.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공사품의 경우,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직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도면, 세부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추후 공지 예정)
-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 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 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 (문의)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 : 주식회사씨엔테크, 042-862-0142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내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입금 증빙)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설비 구입에 대한 입금 증빙서류\* 제출

**<입금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원금액 등 포함

※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 (다만,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응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지급보증보험 가입

※ 가입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을 제출

\* (인정범위) '25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 7. 선금급 제도(요청 시)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사업의 지원품목 구입·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선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 8.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용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 9.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별첨5]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 보조·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급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급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급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10. 기타

-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1644-4555) 또는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지원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9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세부 공고

## 1.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산업안전포털 상 상시근로자수가 0명(또는 50명 이상)인 경우, 「25년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제출하여 상시(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 (유효분에 한함) 제출[ ‘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가능한 공정의 범위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한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 뿌리기업 확인서에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주조산업		소성가공산업		표면처리산업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 코드	업종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구분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1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	21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4	200**	식료품 제조업
5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219**	금속제련업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 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282\*\*인 경우

## 2. 지원 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b>50%</b>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b>10%</b> (또는 2천만원)
지원기준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받은 사업장의 지원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 (지원품목)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설비
- 양산품에 한해 비용 지원(단, 주조·표면처리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에 한해 공사품 지원 가능)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 나.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 ①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②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 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위험물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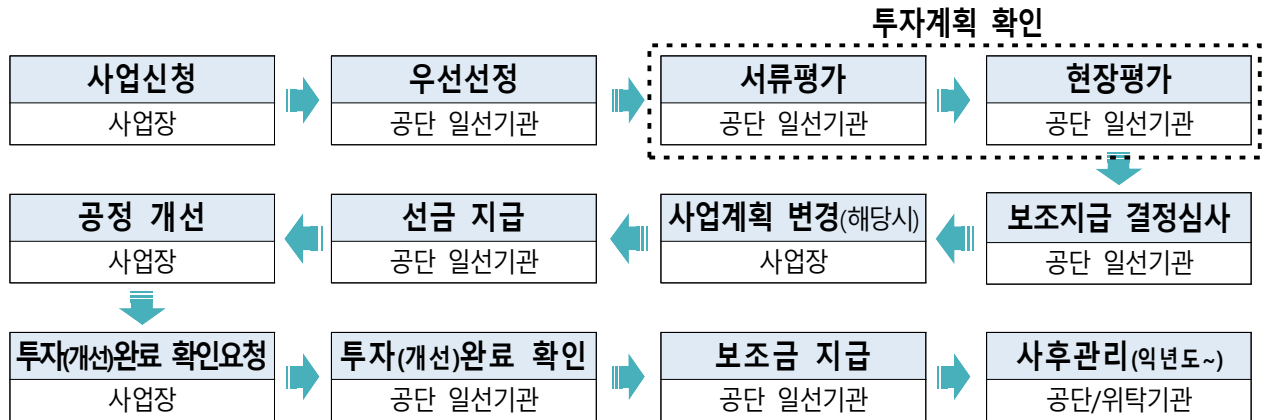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 \* 내화성능, 화재감지·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해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 다. 보행환경, 대피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디자인[별첨1]
- 라. ‘가’ 또는 ‘나’ 품목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단,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에 한함)
-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와 연계한 격벽 또는 내화구조 등 공사품으로서,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불가 사항>**

-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
-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사업절차 및 방법



#### 가. 사업신청(사업장)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복수의 사업장이 장소적(벽·층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설비 등 공유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합산 지원한도 적용
  -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존 설비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계획 수립[별첨2]
  - 사업 신청 시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
    - ※ 우선선정 이후 투자계획 확인(서류·현장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서 반려 조치
- 양산품(지원품목 중 ‘가’ 또는 ‘나’ 항목)의 경우 아래 내용이 검증 완료된 모델에 한해 신청 가능
  - (시장가격 검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민간 거래 실적\*이 5건 이상인 모델

\* 우리 공단 및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응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않은 거래

- (안전성 검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모델(KCs 또는 S마크)

**< 『양산품 모델별 시장가격 및 안전성 검증자로 제출 제도』 상시 운영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모델의 시장가격 및 안전성 증빙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이 이를 검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① 국내 제조사, ②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③ 해외설비 수입업체 (무역상), ④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기간 : (예정) '26. 1. 12.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나. 우선선정

-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일선기관별 선정[별첨6]
-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우선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다. 투자계획 확인

- (서류평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급대상 적정성 여부 등 확인

###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 지원 비대상이거나, 부여받은 점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 예시) 지급대상 비해당 뿌리기업 확인서(용접 등) 제출, 상시근로자 0명 사업장, 부여받은 점수 비해당 등
-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 (현장평가) 신청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등 확인

### <현장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 신청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 개선대상 공정을 해당 소재지에 보유 및 정상가동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 그 밖에 신청 내용과 현장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 동일한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이 최대한도를 기지원받은 경우
- ▶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 공사품의 경우,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직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도면, 세부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추후 공지 예정)

#### 라. 보조지급 결정심사

- 투자계획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 마. 선금 지급(신청 시)

- 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선금은 결정통보 이후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까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결정 금액 이상으로 가입한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사업주 통장 사본 제출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사업참여 시 선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결정통보 후 15일 이내에 신청
    -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 바. 공정 개선(사업장)

-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를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규격·사양 등), 수량, 제작·판매업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 요청
- 제조 설비(지원품목 중 ‘가’)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폐기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미폐기 시 결정 취소)
  -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기존 설비 없이도 신규 도입 가능(단,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 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 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 (문의)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 : 주식회사씨애펜크, 042-862-0142

#### 사.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 기계·설비 등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확인 요청 실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제출하고, 기존 설비 폐기\* 결과 제출[별첨3]
    - \* 폐기 증명 방법 : 주요 구조부를 절단하여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 및 매각·반출 불인정)
- (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을 제출
  - \* (인정범위) '25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 아. 투자완료 확인

- 사업계획과 위험공정개선 결과의 일치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적합 요건) 기존 제조 설비(지원품목 중 ‘가’)를 폐기한 경우,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를 관제시스템에 연동한 경우 등
  - 사전에 공단의 변경 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급 취소 및 지급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될 수 있음
-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신규 도입 설비 구매 적정성 확인
  - (입금 증빙)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설비 구입에 대한 입금 증빙서류\* 제출

### <입금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 (다만,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용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 자. 보조금 지급

- 위험공정개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 차. 사후관리

- 지원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 투자완료 확인일 다음 연도부터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 ※ CNC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및 사유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환수금이 부과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단 계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선금급 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뿌리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3개 분야 뿌리기업에 한함)		(해당시)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1부 (일차전지·이차전지 제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內 3개 분야 미기재 사업장에 한함)		(해당시)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해당시)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 1부(해당시)		(해당시)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해당시)		(해당시)				
①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②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				
③견적서 1부 (공사품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	●			필요시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			
④사업계획서 1부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	●			
개선 사진					●	
계약서					●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XML 파일, 거래명세서					●	
⑤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⑥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⑦이체 확인증					●	
보조금 지급 위임장					(해당시)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⑧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⑨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⑩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①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같음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에 대한 중복금지약약서 제출(사업주 자필서명 必) [별첨7]
- ③ **기본 사양, 옵션 사양, 기타 경비가 구분**되어 있고, 제작·판매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  
※ 공사품의 경우, 도면,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 ④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별첨2]
- ⑤ **【보험가입금액】** 보조결정(확정)금액 이상, **【보험기간】** 투자완료 확인 요청일로부터 6년  
※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결정통보일로부터 6년 6개월
- ⑥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⑦ 설비 구입비 전액에 대한 입금 증빙(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이체 금액 포함)
- ⑧ '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공단 주관 사업주교육에 한해 인정
- ⑨ 보조금 지급 예정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산업안전포털 - 안전동행 - 자료실)
- ⑩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세부 공고

1. 지원대상

-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포털 상 상시근로자수가 0명(또는 50명 이상)인 경우, 「 25년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제출하여 상시(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분에 한함) 제출[ ‘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원청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제조업인 사외하청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원청 직접지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p style="text-align: center;"><b>총 소요비용(100%) 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b>공단</b></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b>원청</b></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b>사업장(자체부담)</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 총 소요비용의 <b>최소 10%</b> (또는 2천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나머지 금액</td> </tr> </table> <p>※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p> <p>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p> <p>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p>	<b>공단</b>	<b>원청</b>	<b>사업장(자체부담)</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총 소요비용의 <b>최소 10%</b> (또는 2천만원)	+ 나머지 금액
	<b>공단</b>	<b>원청</b>	<b>사업장(자체부담)</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총 소요비용의 <b>최소 10%</b> (또는 2천만원)	+ 나머지 금액					
비고	투자완료 시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확인증 제출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구분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b>총 소요비용(100%) 中</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 <b>공단</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 font-size: 2em;">+</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 <b>기금운영기관</b>                      총 소요비용의  <b>최소 10%</b>                      (또는 2천만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 font-size: 2em;">+</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24%;"> <b>사업장(자체부담)</b>                      나머지 금액                 </td> </tr> </table>	<b>공단</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b>기금운영기관</b> 총 소요비용의 <b>최소 10%</b> (또는 2천만원)	+	<b>사업장(자체부담)</b> 나머지 금액
	<b>공단</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b>기금운영기관</b> 총 소요비용의 <b>최소 10%</b> (또는 2천만원)	+	<b>사업장(자체부담)</b> 나머지 금액	
※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 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기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기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고	지원받은 금액은 본부에서 기금 운영기관을 통해 일괄 확인					

다.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자

구분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b>총 소요비용(100%) 中</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 <b>공단</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 font-size: 2em;">+</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 <b>원청</b>                      매칭지원으로                      인정                 </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 font-size: 2em;">+</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24%;"> <b>사업장(자체부담)</b>                      나머지 금액                 </td> </tr> </table>	<b>공단</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b>원청</b> 매칭지원으로 인정	+	<b>사업장(자체부담)</b> 나머지 금액
	<b>공단</b> 공단 판단금액의 <b>40%</b> (8천만원 한도)	+	<b>원청</b> 매칭지원으로 인정	+	<b>사업장(자체부담)</b> 나머지 금액	

- 원청이 총 소요금액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를 부담하여야 하나,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원청이 지원한 것으로 인정

## 2. 지원 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u>40%</u>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보조금 산정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원한도 = 1천만원	

○ (지원품목)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설비

- 양산품에 한해 비용 지원(단, 주조·표면처리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에 한해 공사품 지원 가능)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나.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 ①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②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 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 내화성능, 화재감지·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해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다. 보행환경, 대피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디자인[별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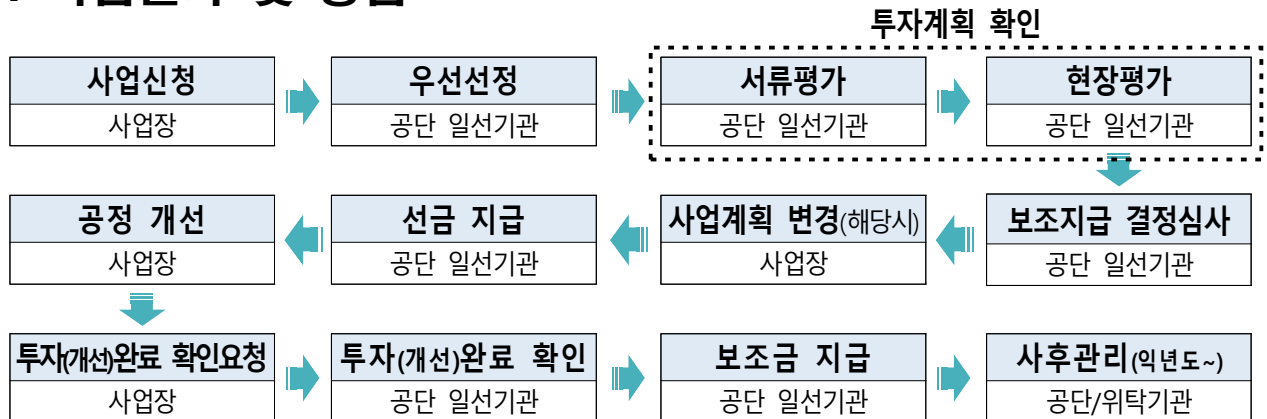
라. ‘가’ 또는 ‘나’ 품목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단,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에 한함)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와 연계한 격벽 또는 내화구조 등 공사품으로서,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불가 사항>**

-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
-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사업절차 및 방법



#### 가. 사업신청(사업장)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복수의 사업장이 장소적(벽·층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설비 등 공유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합산 지원한도 적용

-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존 설비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계획 수립[별첨2]
- 원청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 신청
  - ※ 원청 직접지원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작성된 ‘원청지원 예정확인서’ 제출[별첨3]

(예시) <상생협력재단 지원유형 신청 방법> ※지급대상 中 ‘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혁신지원부 02-368-8953

- 사업 신청 시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
  - ※ 우선선정 이후 투자계획 확인(서류·현장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서 반려 조치
- 양산품(지원품목 중 ‘가’ 또는 ‘나’ 항목)의 경우 아래 내용이 검증 완료된 모델에 한해 신청 가능
  - (시장가격 검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민간 거래 실적\*이 5건 이상인 모델
    - \* 우리 공단 및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않은 거래
  - (안전성 검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모델(KCs 또는 S마크)

**< 『양산품 모델별 시장가격 및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 제도』 상시 운영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모델의 시장가격 및 안전성 증빙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이 이를 검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① 국내 제조사, ②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③ 해외설비 수입업체 (무역상), ④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기간 : (예정) '26. 1. 12.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나. 우선선정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경우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우선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다. 투자계획 확인

- (서류평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급대상 적정성 여부 등 확인

###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 지원 비대상이거나, 부여받은 점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예시) 원청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부여받은 점수 비해당 등
-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 (현장평가) 신청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등 확인

### <현장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 신청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 개선대상 공정을 해당 소재지에 보유 및 정상가동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 그 밖에 신청 내용과 현장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 동일한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이 최대한도를 기지원받은 경우
- ▶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 공사품의 경우,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직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도면, 세부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추후 공지 예정)

## 라. 보조지급 결정심사

- 투자계획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 마. 선금 지급(신청 시)

- 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선금은 결정통보 이후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까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결정 금액 이상으로 가입한 지급보증보험 증권과 사업주 통장 사본 제출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사업참여 시 선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결정통보 후 15일 이내에 신청
-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 바. 공정 개선(사업장)

-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를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규격·사양 등), 수량, 제작·판매업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 요청
- 제조 설비(지원품목 중 ‘가’)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폐기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미폐기 시 결정 취소)
  -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기존 설비 없이도 신규 도입 가능(단,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 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 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문의)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 : 주식회사씨애펜크, 042-862-0142

### 사.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 기계·설비 등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확인 요청 실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제출하고, 기존 설비 폐기\* 결과 제출[별첨3]
    - \* 폐기 증명 방법 : 주요 구조부를 절단하여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 및 매각·반출 불인정)
- (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을 제출
  - \* (인정범위) '25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 아. 투자완료 확인

- 사업계획과 위험공정개선 결과의 일치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적합 요건) 기존 제조 설비(지원품목 중 '가')를 폐기한 경우,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를 관제시스템에 연동한 경우 등
  - 사전에 공단의 변경 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지급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될 수 있음
    -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신규 도입 설비 구매 적정성 확인

- (입금 증빙)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설비 구입에 대한 입금 증빙서류\* 제출

**<입금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원금액 등 포함

※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하고, 원청 또는 기금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확인증도 함께 제출 (다만,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용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자. 보조금 지급**

- 위험공정개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차. 사후관리**

- 지원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 투자완료 확인일 다음 연도부터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 CNC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및 사유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환수금이 부과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단 계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선금급 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필요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해당시)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해당시)	(해당시)					
①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②보조·용자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				
③견적서 1부 (공사품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			
④사업계획서 1부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	●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1부 (상생협력사업 지원 분야 신청에 한함)	(해당시)					
⑤원청지원 예정확인서 1부 (원청직접 지원 분야에 한함)	(해당시)					
개선 사진					●	
계약서					●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XML 파일, 거래명세서					●	
⑥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⑦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⑧이체 확인증					●	
보조금 지급 위임장					(해당시)	
⑨원청의 지원내역 증명 1부 (원청직접지원 분야에 한함)					(해당시)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⑩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⑪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⑫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①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같음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 보조 지원에 대한 중복금지협약서 제출(사업주 자필서명 必) [별첨7]
- ③ **기본 사양, 옵션 사양, 기타 경비가 구분되어 있고, 제작·판매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  
※ 공사품의 경우, 도면,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 ④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별첨2]
- ⑤ 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작성하여 직인 인영(원청 인감증명 첨부) [별첨8]
- ⑥ 【보험가입금액】 보조결정(확정)금액 이상, 【보험기간】 투자완료 확인 요청일로부터 6년  
※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결정통보일로부터 6년 6개월
- ⑦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⑧ 설비 구입비 전액에 대한 입금 증빙(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이체 금액 포함)
- ⑨ 원청 지원내역 제출(⑧번 항목에 준하는 입금 증빙) ※ 원청이 대신 구매하는 등의 증명 불인정
- ⑩ '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사업주교육에 한해 인정
- ⑪ 보조금 지급 예정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산업안전포털 > 안전동행 > 자료실)
- ⑫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 1. 개요

### ○ 「작업장 안전디자인」이란?

- 작업장 내 시인성 부족에 따른 ①불안전한 행위 유발, ②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로 다수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 \* 아리셀 화재사고(24. 6. 24. 23명 사망, 8명 부상), 지게차 부딪힘 사망 다수 발생 등
- 작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신규채용·외국인·사무직 근로자 등)를 포함하여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이가 작업장 내 안전한 보행 환경 및 대피로 등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뚜렷하게 제공하기 위한 작업장 내 디자인을 말함

## 2. 지원 내용

- (비용 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가이드라인(5종)」 중 하나 이상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요비용의 40 ~ 50% 보조금 지원
  - ※ 단, 보조금 지원 한도는 제조공정,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설비를 포함하여 최대 1억원
- (가점 부여) 총 5종 중 4종(보행안전 2종, 소방안전 2종)을 모두 도입하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 가점 항목 체크(√) 및 관련 서류 첨부 필요

## 3.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덧붙임] 참조

- ※ 출처 : 본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협업해 개발한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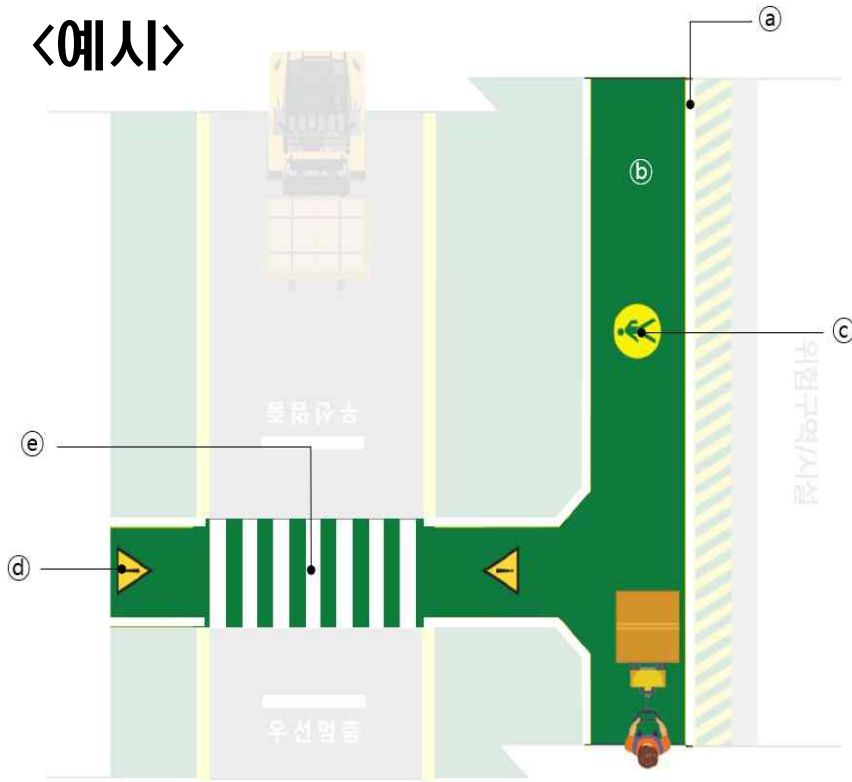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상,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계획을 작성하고, 도입예정 장소에 대한 전경 사진 첨부 필요하며, 표준모델을 준수한 현장도면 및 그에 따른 견적서 제출 필요
- (사후 관리) 사후관리 기간 내 적정하게 유지·관리 필요

# 【덧붙임】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 가. 보행안전 표준화

### ① 보행로(작업장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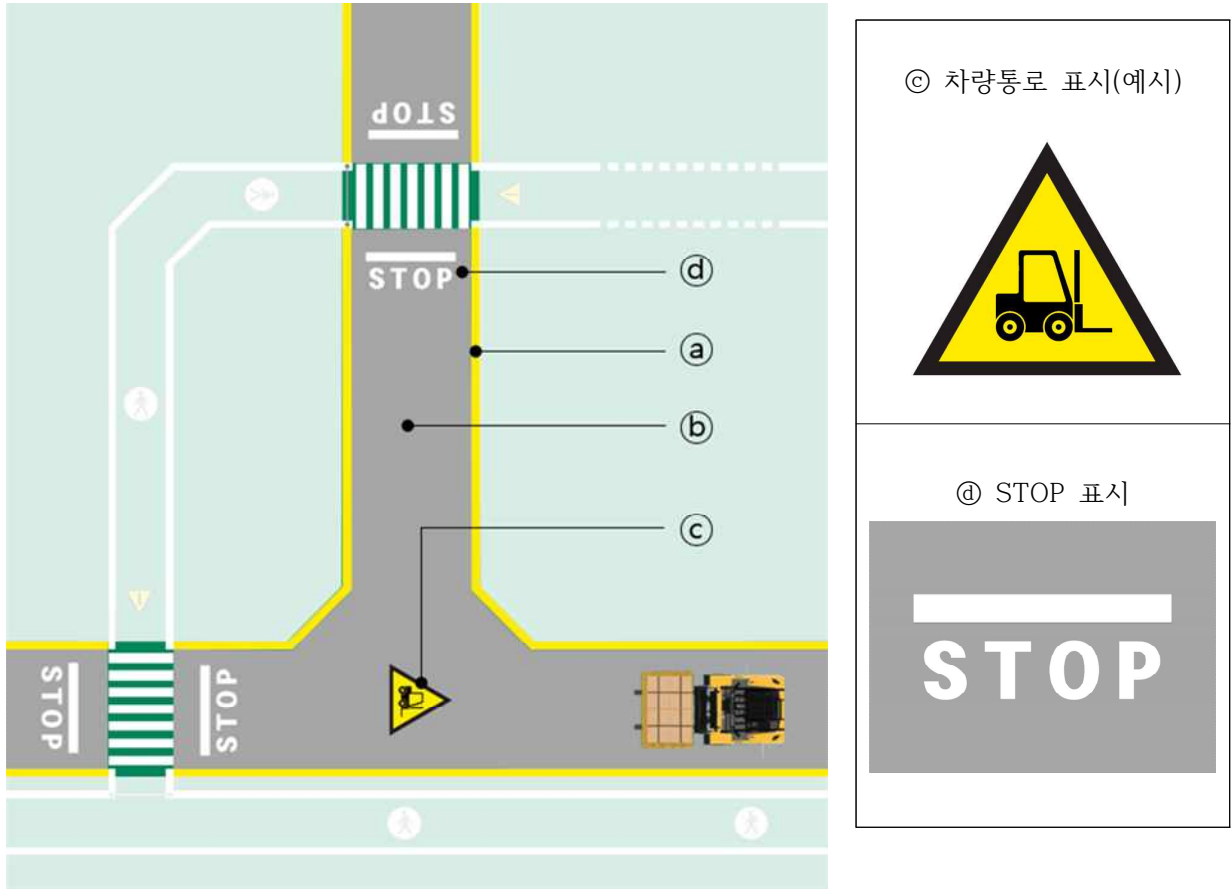
#### 【도장 방법】

- ① 프라이머 작업 후 에폭시 도장(추천 건조막 두께: 3mm)
- ② 논슬립 에폭시 코팅 도포
- ③ 코팅 후 에폭시 라인 마킹

####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규격	비고
㉓	보행로 경계선	흰색	폭 15~20cm	· 코너는 45° 이상의 둔각으로 직선처리
㉔	보행로	초록	폭 80cm 이상	· 권장 폭 : 120cm 이상
㉕	「보행로」 표시	노랑	직경 : 60cm 이상 (권장)	· 투명 에폭시 코팅 도포 전 스티커 등 매입 방식 가능
㉖	「차량위험」 표시	노랑	직경 : 60cm 이상 (권장)	
㉗	횡단보도	흰색	20cm 마다 등 간격	-

## <예시>



### 【도장 방법(순서)】

- ① 바닥 평탄화 및 프라이머 작업 후 에폭시 도장 (추천 건조막 두께: 3mm)
- ② 논슬립 에폭시 코팅 도포
- ③ 코팅 후 에폭시 라인 마킹

###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폭	비고
㉔	차량통로 경계선	노랑	16-20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 보행로와의 이격거리 : 30cm 이상</li> <li>· 코너는 45° 이상의 둔각으로 직선처리</li> </ul>
㉔	차량통로	회색	(비고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대 통로 : 운행 차량(지게차 등) 최대폭 + 60cm</li> <li>· 교행 통로 : 운행 차량 2대의 최대폭 + 90cm</li> </ul>
㉔	「차량통로」 표시 (잔출입구 등 주요 장소)	노랑	직경: 100cm 이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 에폭시 코팅 도포 전 스티커 등 매입 방식 가능</li> </ul>
㉔	「STOP」 표시 (횡단보도 앞)	흰색	도로폭의 60% (권장)	

<예시>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㉑: 배경색을 흰색(=축광 도료)  
 ㉒,㉓: 이미지 및 텍스트는 초록색(=일반 도료)으로 시공



【도장 방법(순서)】

- ① 프라이머 작업
- ② 내구성이 높은 고후도 축광페인트 도장(표준두께 0.1~0.3mm)  
 ※ 축광도료 사용은 『㉑ 배경(흰색)』에 한함
- ③ 투명 에폭시 코팅(최소 0.2mm 두께) 도포

【세부 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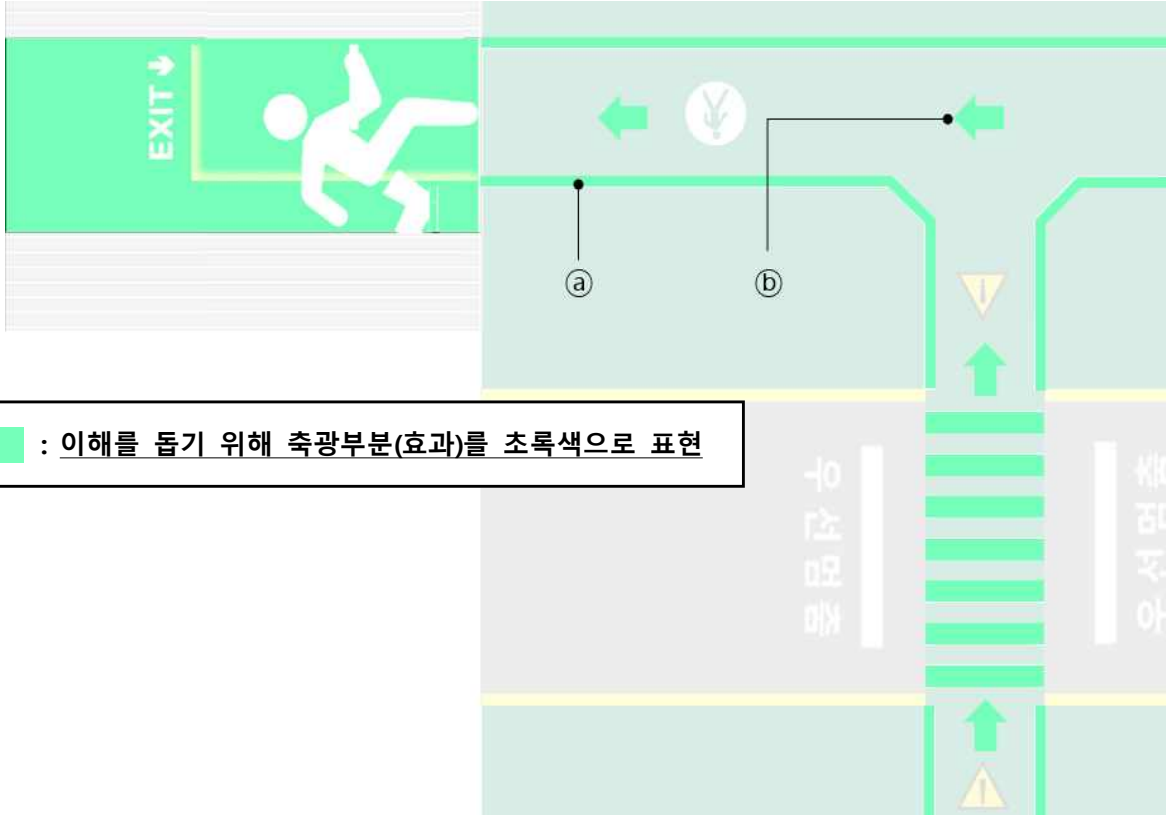
번호	구분	색상	규격	비고
㉑	배경	흰색 <축광>	가로: 문 폭의 1.2배 이상 세로: 바닥 ~ 천장(권장)	· 문경계로부터 여유폭이 기준 미만인 경우 최대
㉒	대피 사인(🚶)	초록색	높이 150cm 이상	· 사인 방향은 문이 열리는 방향과 일치
㉓	「EXIT」 표시	초록색	문경계 외측 위쪽에 글자 높이 24cm 이상	· 창문 등으로 인해 「EXIT」 표시 불가한 경우, 「피난구유도표지(소방시설법)」 대체 인정

※ 본 디자인은 시인성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소방법 등)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나. 소방안전 표준화

- ④ 비상유도사인(축광도료를 활용하여 비상시 「㉠비상구」로의 대피유도 강화)  
 ※ 「㉢비상구」와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행로」와 연계(경계선 축광도료 도포)하는 것도 인정

<예시>



【도장 방법】

- ① 내마모 축광도료(최소 0.5mm 두께)를 사용    ② 투명 에폭시 코팅(최소 0.5mm 두께) 도포  
 ※ 「㉠ 보행로」 도입하는 사업장이 해당 보행로를 비상유도사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맞게 도장한 뒤, 위 방식으로 추가 도장해야 함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규격	비고
㉠	「㉠보행로」와 병행하는 경우	흰색 <축광>	보행로 경계선 두께와 일치 (15 ~ 20cm)	· 「㉠보행로」 경계선을 위 도장 방법으로 도포 가능
	그 외 (계단 포함)	기존색* (권장) <축광>	15~20cm (선두께)	· 2줄로 평행하게 도장(라인 간 최소 80cm 이격)
㉢	대피방향 표시 (화살표)	기존색 (권장) <축광>	폭 : 40cm 이상 (5m 마다 권장)	· 비상유도사인(2줄) 중앙부에 비상구 방향으로 ※ 단, 교차로 중앙에는 반드시 표시

\* [예시] 「㉠ 보행로」 외 초록색 철재 계단에 비상유도사인을 표시하는 경우, 기존색(초록색) 축광도료로 시공

※ 본 디자인은 시인성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소방법 등)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예시>



【도장 방법】

- ① 프라이머 작업 후 에폭시 도장(추천 건조막 두께 3mm)
- ② 논슬립 에폭시 코팅 도포
- ③ 코팅 후 에폭시 라인 마킹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폭	비고
㉞	패턴 모양	검정/노랑	10cm~15cm 등 간격 권장	· 45°의 사선으로 패턴 표시 · 폐합된 형태(벽 등 포함)
㉟	패턴 규격	-	최소 40cm 이상	· 위험물 등 경계로부터 최소폭 확보
㊱	「위험구역」 표시	노랑/검정	폭 70cm 이상 높이 120cm 이상	· 위험 내용에 맞게 설치(예시 참조)

## [참고] 디자인전문기업과 협업을 원하시는 경우, 기업 검색 경로

### \* 「디자인전문회사」 검색 방법

1. 검색창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https://designfirm.kidp.or.kr>)' 검색
2. 오른쪽 상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 클릭
3. 분야에 '시각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등 설정 / 해당 지역, 시군구 설정
4. 관심 기업 클릭 후, 포트폴리오 확인
5. 기업에 직접 문의

※ 위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며, 본 사업과는 별개로서 디자인기업 검색 경로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 우수디자인전문회사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기업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신고 전 준비서류 신고자격 자주묻는질문 신고 및 출력하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

본 사이트에서 조회된 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이며 전문인력이 0명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아직 전문인력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0명으로 표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야: [ ] 시도: [ ] 시군구: [ ]

기업/사업자 등록 번호 [ ] **조회** 초기화

조회된 등록 업체: 15,063건 (페이지 1/1507)

No.	분야	기업명	사업자 등록 번호	지역	전문인력수	조회수
15063	환경	(주)기술사사무소 예당	802-88-XXXXX	경기 성남시 분당구	2	2
15062	시각	세모디	614-35-XXXXX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	1
15061	기타	주식회사 사람과모빌리티	762-81-XXXXX	경기 안양시 동안구	1	0
15060	시각	주식회사 인피닉스	401-87-XXXXX	경기 용인시 기흥구	1	0
	시각					